

#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53
------	----

제출일자 : 1998. 12. 3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## ■ 개정이유

- 거창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폐지된 조례이므로 동조례 항목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.

## ■ 주요골자

- “거창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삭제함.(제2조제1호)

## ■ 개정근거

-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(조례제1388호 1996. 1. 12)

##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중 “거창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삭제함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</p> <p><u>1. 거창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한 “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특별지원사업”의 기금 또는 자금</u></p> <p>2. 군수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보한 자금</p>	<p>제2조 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</p> <p><u>1. “새마을소득금고 및 소득특별지원 사업”의 기금 또는 자금</u></p> <p>2. 현행과 같음</p>